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과 장 김지수 사무관 한주철	042-481-8321 042-481-5400
	2015년 5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 2015년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CSP란 한국,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관련 시장을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그만큼 CSP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청장은 “한-미 간에 시행될 CSP는 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양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라며, “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CSP 신청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특허청(청장 최동규)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문의는 동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할 수 있다.

□ 한편, 동일 날짜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대학의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를 위해 금년 중에 중국에서 대학 IP 역량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간 심판 및 소송분야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심판관을 상호 파견하는데도 합의하였다.

<붙임 1>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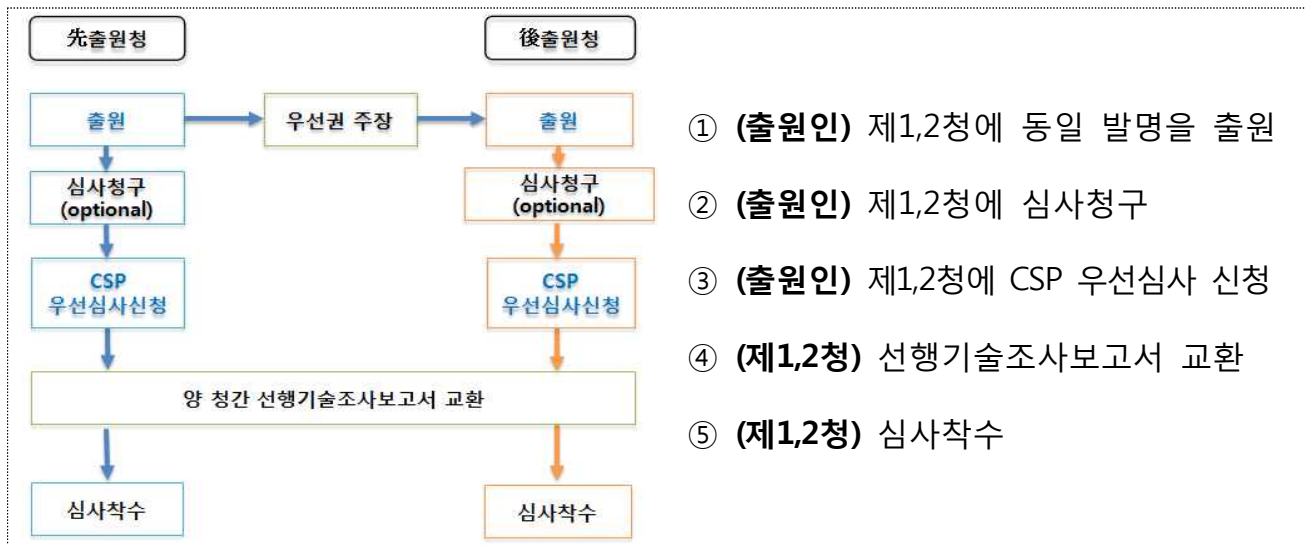
<붙임 2> 미국 우선심사제도 개요

가. 추진배경

- 여러 국가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한 국가는 특허를 부여 하였음에도 다른 국가는 특허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
 -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CSP를 특허청간 협업심사 과제로 제안

나. CSP 개요

- (개념)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양청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여 심사착수時 활용
- (심사절차)



다. CSP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특허청간 심사 견해를 사전에 공유하는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권의 안정성 개선
- CSP 시행청이 확대되는 경우,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기 특허 취득 기대

라. 추진일정

- (~'15.8월) '15.9월 한-미 CSP 시행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속) 유럽 및 일본과 CSP 시행 추진 중

■ USPTO는 우선심사 제도로써 「Make Special」 운영

- 무료로 운영되는 “연령/건강 관련 출원”, “PPH”와, 유료로 운영되는 “Accelerated Examination”, “Prioritized Examination”으로 구분

□ 대상출원 및 신청요건 등

- (연령 또는 건강 관련)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출원인 / 수수료 무료
- (Accelerated Exam.(AE)) 모든 출원 대상
 - 단, 청구항수(독립항 3, 총항 20) 제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의무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움 / 수수료 \$140
 - * 검색 기술 분야, 검색어, DB 등을 포함하는 선택색 수행 결과와 IDS를 포함한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대비, 특허성에 대한 상세 설명 등 AE 지원문서 제출 필수 → **우리청 확대된 우선심사와 유사**
- (Prioritized Exam.(PE)) 모든 출원 대상
 - 청구항수(독립항 3, 총항 30) 제한, 연간 10,000건 제한 등이 있으나, AE 대비 신청 요건이 완화됨 / 수수료 \$4,000
- (PPH) 최선일이 동일하고 타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 발명
 - * 타청과 동일한 요건/ 28개국과 협약

<USPTO의 make special 신청대상 · 요건 등>

	Make Special			
	연령 또는 건강 관련	Accelerated Exam. (AE)	Prioritized Exam. (PE)	PPH
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출원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외국청에서 특허가능 통지된 청구항 발명
신청요건	없음	독립항3, 총항20 이하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전자출원 등	독립항3, 총항30 이하 등 연간 10,000건 제한	없음
수수료	무료	\$140 Small Entity: 50% 감면 Micro Entity: 75% 감면	\$4,000	무료
심사착수 기간(13년)	-	3.9개월 (일반심사 18.4개월)	4.9개월 (일반심사 18.4개월)	4.4개월 * '13.6~12월 기준